

# 소음과의 분쟁, 준비한 자만이 승리한다

현재 사슴을 키우고 있는 양록인들에게 양록업에 뛰어들 계기를 물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조용한 시골에서 평화롭게 사슴을 키우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찾기 위해”란 대답도 만나볼 수 있다.

실제로 공직생활, 혹은 일반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말 그대로 ‘조용한’ 시골을 찾아 양록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사슴이 야생성이 강한 짐승이라 시골벽적인 도심에서 키울 수가 없는 측면도 있지만 조용한 농촌 생활이 꿈에 맞지 않으면 사슴은 물론이고 어떠한 축종도 즐겁게 키워낼 수 없다.

그러나 막연히 도시외곽 지역이 조용하다는 사실만 믿고 있다가 인근에서 시골벽적인 공사라도 시작되는 날에는 ‘조용한’ 농촌생활은 둘째치고라도 소음에 약한 사슴들이 죽어 나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가축업은 도시외곽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야산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요즘의 건설공사는 국가적인 대규모의 공사, 즉 도로공사, 택지공사, 골프장건설 등으로 도시내·외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때문에 건설공사 소음과 이로 인한 사슴피해 관련 분쟁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그 건수도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 소음관련 분쟁, 해마다 늘어

실제로 소음관련 분쟁으로 말미암아 본회에 사슴시세 및 녹용시세, 예상피해액 등을 문의하는 양록인 및 건설시공사, 관련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원 등)이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각종 건설사업이 시 외곽지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동안 소음과 관련해 무던히 참고만 지내던 양록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권리 찾기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단 소음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피해 원인이나 배상 규모를 둘러싸고 상호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소음이 사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접해본 목장주와는 반대로 사슴에 대해 전문지식이 전혀없는 시공사측이 적정 수준의 보상이란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사 양측 모두 사슴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보상금액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사슴 한 마리가 폐사하더라도 목장주는 소음탓을, 시공사측은 목장주의 관리 소홀을 탓하기 일쑤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는 피해 원인이나 배상규모를 둘러싸고 상호 대립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측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바, 합의점을 찾기 못하고 법에 호소할 경우 목장주는 소음과 사슴 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준비해야 승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 소음과의 분쟁은 자료확보가 관건

즉, 사슴이 폐사하게 되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수의사의 폐사원인 진단서, 증거물 보존, 폐사 전후 개체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목장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특히 공사 전후의 사슴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은 훌륭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녹용 생산량 저하에 따른 피해부분은 전년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종족으로 사용하는 사슴의 경우 암사슴의 자육 생산에 관한 피해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녹용 생산량이 우수한 사슴의 경우 개체관리 카드를 평소에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녹용 12kg을 생산하는 종족의 자육과 20kg을 생산하는 종족의 자육 가격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증빙 자료들이 산정됐다하더라도 농가가 재판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사슴에 해박한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 문제지

만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에 앞서 농가가 보다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곳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단체로 각종 환경분쟁 문제를 중재해 주는 곳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에 소음관련 분쟁을 중재해 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조정위의 결정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결정을 분쟁 당사자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 못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 조정위원들이 환경분야 대학교수를 비롯해 환경전문가들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옮겨가더라도 판결 결과는 분쟁조정위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각종 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마련하므로 앞서 언급했듯이 평소 피해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농가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개인이 시공사측을 상대로 나홀로 투쟁에 나서기보다는 생산자단체인 본회와 함께 숙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양록**